	<h1>보도 참고자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h2>16:00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		
책임자	권대영 과장 (2156-9810)	담당자	이석란 서기관 (2156-9811) 송용민 사무관 (2156-9814)
배포일	2014. 6. 9.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7매

제 목 : 신제윤 금융위원장 “숨은규제 찾기” 간담회 결과 정리 - 4~5월 2개월 동안 금융현장 12차례 방문 -

1. 금융규제개혁 경과 및 검토과제 발굴

-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개혁을 추진
 -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개선 과제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
 - ①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소기업, 금융회사, 학계·연구원 등과 함께 12차례 릴레이 간담회 개최
 - ② 금융유관기관(25개 금융공기업, 협회, 연구원 등)과 함께 규제 목록화, 민원 분석, 수요자 서베이 등을 통해 검토과제를 발굴
 - *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내규, 지침,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
 - ③ 한편, 4.3일부터 금융이용자, 금융회사가 비공개(익명)로 제안 가능한 “숨은규제찾기” 사이트(www.fcsc.kr)도 운영

< 현재 발굴·제안되어 검토중인 과제 현황(5월말 기준) >

위원장 간담회	금융유관기관 제안	숨은규제 Site	계
168건	1,438건	110건	1,716건

※ 중복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검토대상 과제는 적을 것으로 예상

2. 금융위원장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주요 내용(요약)

가. 간담회 개요

- 청년창업재단, 중소기업중앙회,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
- 중소·벤처·창업기업인, 장애인 부모, 금융회사 실무자, 연구원·학계,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여
- 약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금융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며 토론을 진행

- ① 창업·벤처기업(4.10, D.Camp), ② 장애인 및 학부모(4.17, 서울 경운학교),
- ③ 은행 등 준법감시인(4.30, 은행연합회), ④ 국내 외국계금융사(5.8, 금투협회)
- ⑤ 금발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(5.15, 은행연합회) ⑥ 금융투자업(5.19, 금투협회)
- ⑦ 보험업(5.20, 금융위원회), ⑧ 부동산금융(5.21, 은행연합회)
- ⑨ 여전업·저축은행업·신협(5.22, 여전협회), ⑩ 금융사 해외진출(5.27, 금융연구원)
- ⑪ 중소기업수출입기업(5.28, 중소기업중앙회), ⑫ PEF·헤지펀드·프라임브로커(5.29, 금투협회)

나. 주요 참석자 제안 및 위원장 답변 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

참석자 제안

- ① **[규제개혁 방향]** 글로벌 위기 이전 자율화(de-regulation)와 이후 재규제(re-regulation)가 혼재되어 있지만, **우리는 여전히 규제완화 기조가 필요**
-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역동성을 위해 진입에 있어 경쟁촉진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며, 특히 **자본시장 규제**는 점진적(Piecemeal) 방식이 아닌 **빅뱅적 접근(Big Bang Approach)**이 필요
- 자산운용, 해외시장, 연금 등 자산관리 분야 등 **새로운 분야 육성**
- 전업주의 한계 극복 및 **Negative 전환**을 위해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나누어 제조규제는 유지하고 **판매 부분의 규제완화** 추진 제안
-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한 불안 차단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신뢰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규제는 유지

② **[실물지원 강화]** 담보·보증 중심의 금융관행 개선 및 **기술·성장성·아이디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** 시스템 구축

○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관행과 청년·창업기업 지원대상 창업자 연령(현행 20세 이상)과 창업기업 기준(현행 3년) 개선

③ **[부동산·점포 규제]** 은행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실제 사용면적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, 과도한 방화벽 규제로 **은행과 증권 등의 지점 또는 점포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이 어려움**

○ 또한,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적용법률의 차이로 부동산 개발·투자 과정에서 각종 규제차익 발생

④ **[해외진출]** 국내 전업주의 체계로 인해 **현지법이 허용**하고 있는 IB, 투자일임업, 유가증권 인수 등의 **업무가 제한**되고 있으며,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

⑤ **[자산운용분야]** 특성에 맞지 않는 **NCR규제** 및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을 폐지

⑥ **[저축은행·신협]** 관계형 금융이 가능하도록 **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적 개선** 및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 개편

⑦ **[파생·증권]**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**파생상품 규제 개선**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

⑧ **[가격규제]** 배당, 금리, 수수료 등 가격변수의 **시장 자율성 확대**

⑨ **[비명시적 규제]** 법령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**구두지도, 모범규준, 실무자해석** 등을 통한 비명시적 규제양산 관행 개선

금융위원장 주요 답변

- ① **[규제개혁 방향]** 간담회를 통해 **‘이런 규제가 있었나’** 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체감
- 창업 등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낡거나 중복된 규제들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
- 다만,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**금융업 전체의 시장(Pie) 확대**가 중요
 -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(de-regulation)이 아니라 **좋은 규제(better regulation)를 만드는 것**이므로,
 - 건전성,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,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잘 지킬 필요
 - 또한,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**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**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
 - 법령 뿐만 아니고 내규,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정보를 목록화하여 공개하고, 주기적으로 점검·개선할 계획
- ② **[실물지원 강화]** 창업·벤처기업의 창의와 열정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의 지원 역할 강화
- 특히 창업 지원대상인 **청년, 창업기업 기준 등 낡은 규제를 개선**하고 매출액 외에 기술력과 성장성에 기초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
 - **기술평가시스템 구축**, 연대보증 폐지 확산, 코넥스·코스닥 상장활성화,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
 -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(5.23일),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유도
- ③ **[부동산·점포 규제]** 은행의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투기억제 시점에 도입된 **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**를 개선
-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상이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 투자·개발·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

- ④ **[해외진출]**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**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**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
 - 잠재력이 큰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지위고하·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면담 등을 통해 적극 지원
- ⑤ **[자산운용분야]**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「**운용 - 진입 - 영업 - NCR 규제**」 등 **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**하여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- ⑥ **[파생증권]**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**장내 파생상품 규제**,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
 - 금융투자업계도 기존 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M&A, 자산관리 연계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고민할 필요
- ⑦ **[비명시적 규제]** 근거 없는 **구두지도는 원칙 폐지**하고,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관행을 정립
- ⑧ **[내부통제]** 규제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**준법의식과 내부통제**를 강조
 - 준법감시인의 위상·권한 강화 및 CEO 관심 제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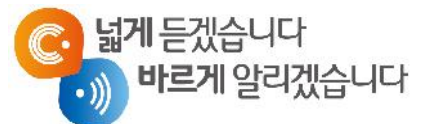
3. 향후계획

- 간담회,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 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**충분한 의견수렴**을 거쳐 「**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**」에 반영할 예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< 1. 창업·벤처기업 간담회(4.10일, D.Camp) >

- 예비창업인, 창업초기·기술창업 기업인 등이 참석하여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
 - 자산, 매출액 중심의 보증·대출심사 시스템으로 인해 **창업 아이디어, 기술력**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움
 - 지원대상인 **청년·창업자의 범위**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실패경험이 있는 재도전 창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
- 위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벤처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창업으로, 창업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
 - 기술평가시스템 구축, 연대보증 폐지, 코넥스 개설,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체계적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**하반기부터는 실제 지원 등 가시적 효과를 내도록 노력**
 - 간담회에서 제기된 금융현장에서 창업을 방해하는 관행적인 낡은 규제 등에 대해서는 **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**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은행의 창업자금 지원시 기술신용평가정보 반영
- 우수 창업자에 대한 신·기보 연대보증 면제를 시중은행으로 확산
- 청년/창업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창업자연령, 기업업력 제한 완화
- 재도전 창업자에게도 신규보증 기회 부여 등

< 2.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(4.17일, 서울 경운학교) >

- 장애인단체 관계자, 장애인 및 장애인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상 애로사항을 제기
 -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시행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**장애인에 대한 상품 가입 거절 사례**가 여전히 발생
 -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 가입시 소득이 증가하여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되는 사례를 최소화
 - 장애인의 경제적 부양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이므로 장애인의 유형, 부모의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**장애인의 Needs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**
- 금융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**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**하겠다고 약속
 - **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 출시(5.23)**,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,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
 -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
-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
-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

< 3. 준법감시인 간담회(4.30, 은행연합회) >

□ 준법감시인의 과도한 겸직 및 권한·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예방 컨트롤타워*로서의 역할 수행이 곤란

* 실제 운영행태를 보면 감사(위원회)의 하부기능 수준에 머무름

○ 실효적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인력 확보 및 업무절차 중지권한 등 **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직위 부여가 필요**

* 기타 영업점 준법감시인력의 인사평가 권한 부여, 결격사유 완화(현 주의요구→ 감봉요구 이상), 독립성·충실성을 저해하는 겸직 제한 등을 제기

□ 아울러 준법감시인들은 CEO의 무관심속에 **과당 경쟁, 지나친 성과주의***로 인해 내부통제가 소홀해지는 측면을 언급하며,

* 일부는 내부통제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비용(cost center)으로만 인식

○ **성과보상과의 연계***를 통한 행태·인식의 변화 필요성**을 지적

*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등의 도입

** 기타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한 평판리스크 증대 필요성도 제기

□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준법감시인과 CEO의 역할을 강조하며, 상기 의견들을 검토하여 **법령 또는 모범기준을 통해 반영**하겠다고 밝힘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감사와 준법감시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
- 내부통제가 외형상 인프라 구축을 넘어 조직문화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성과·보상체계와의 연계가 필수적
- 금융회사가 실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(지침)의 해석이 필요

< 4.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(5.8일, 금융투자협회) >

-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 등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금융규제 개선 등 영업상 애로사항 논의
 - 금융상품 개발 규제, 업권별 파생상품 인가 제한 등 차별적이고 과도한 영업규제로 적극적 투자와 경영활동에 어려움 존재
 -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**일률적 IT 인력비율 적용** 등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로 부담 발생
-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혁신적 금융상품과 선진 투자 기법이 금융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, 금융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의 개선을 약속
 -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상품 출시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나가되,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도 중요
 - **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신규인가제한**, 보험상품개발 규제 등 진입·영업 규제가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적극 검토
 - 또한, **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정례화**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금번에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신규인가 제한이 폐지된 증권업과 동일하게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인가에 대한 제한 완화
- 보험상품개발 시 사전검증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, 사후 검증을 강화
-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IT인력의 일률적 규제* 개선
* 정보기술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5% 이상 보유해야 함

< 5. 금융권 연구기관장 간담회(5.15일, 은행연합회) >

- 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① 과거 규제개혁이 평가받지 못한 이유, ② 업권이나 업종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 가능한지, ③ 영업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 상충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요청

<논의 내용>

- ① **(그간 규제개혁 실패요인)** 금융업권간 이해관계 때문에 균형적, 점진적 (Piecemeal)으로 접근
 - 법령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모범규준이나 감독 실무자가 금지하거나 영업행위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음
- ② **(규제개혁 방식)** 그간의 점진적 방식이 아닌 이제는 빅뱅적 접근(Big Bang Approach)이 필요 (특히 자본시장의 경우)
 - 기존 금융권간 경쟁을 촉진하고, 신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되, 퇴출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- ③ **(업권별 규제차이)** 자본시장의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, 특히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산관리 시장이 중요
- ④ **(Negative 규제 전환)**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된 업무범위 규제를 제조와 판매로 나누고,
 - 금융상품 제조는 규제를 유지하고 판매는 완화하면, 법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→ 연구용역 진행중
- ⑤ **(영업규제)** 금융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회사 스스로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필요

< 6. 증권업 숨은 규제 간담회(5.19일, 금융투자협회) >

- 증권사들은 영업 활동, 기업 자금조달 중개, 해외진출 추진 등의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
 -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창조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규제완화 흐름을 이어나가고, '보이지 않는 규제'로 작용하고 있는 **주요 기관투자자의 관행**도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
- 금융위원장은 정부-유관기관-증권업계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함으로써, 증권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
 - 특히, 정부는 앞으로 **파생상품시장 규제, 영업상 인가 규제**, 해외진출과 관련되는 **외국환 규제** 등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힘
 - 아울러, 증권업계도 기존 사업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M&A, 자산관리연계 등 **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고민**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시장 규제의 정상화
-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 확대
- 금융투자업자의 외화대출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
- 대차거래 제도 개선, 전단체 시장 활성화 등 단기자금조달 지원 등

< 7. 보험업권 규제개선 간담회(5.20, 금융위원회) >

-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(RBC 규제 강화)과 관련하여 업계의 어려운 현실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 시행 건의
 - 저금리 기초를 반영하여 **표준이율 및 공시이율 산정기준 조정**
 - 다만, 산업 전체적인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GA, 공제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
 - 금번 보험업권 규제개선의 기본 방향은 **新보험 성장동력 창출** 애로 사항을 점검·보완하고 업권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
 - 보험사 건전성 감독 정책은 선제적 리스크 흡수 능력 창출과 함께 업계의 적응과 제도 연착륙을 균형있게 고려
 - 특히, 연금시장 활성화 또는 사회보장제도 보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, 他 **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**
- ⇒ 제기·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체계적 검토 당부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RBC 강화 계획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계 부담 조화 필요
- 보험가격(예정이율 등) 결정 관련 자율성 확대 필요
- 비전속대리점(GA)의 관리 차원에서 책임의무 부과방안 마련
- 보험공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

< 8.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간담회(5.21일, 은행연합회) >

- 금융기관, 리츠, 부동산신탁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규제의 적정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기
 - 은행은 부동산 임대가능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고, 소유 부동산에 대한 증축 등이 허용되는지도 불확실
 -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적용법률의 차이로 부동산 개발·투자 과정에서 각종 규제·계약조건이 상이하여 규제차익 발생
-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낡은 금융규제를 하루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, 금융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
 - 은행의 임대면적 제한 등 과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
 -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상이한 규제체계를 정비·완화하는 등 부동산 개발·투자 환경을 개선하여, 「투자 - 개발 - 회수」라는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은행의 공실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범위를 확대하고, 폐쇄점포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증축 등을 허용
- 부동산펀드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경우, 운용·관리도 가능하도록 허용(부동산·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간 인가단위 통합)
- 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처분제한기간(주택 3년, 비주택 1년) 단축
-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(자산의 70%)을 폐지

< 9. 중소기업 분야 간담회(5.22일, 여신금융협회) >

- 저축은행의 예시 위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, 여전사의 오토론을 가계대출이 아닌 본업으로 간주 요청
- 지역신협 공동유대 등 업권간 규제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동일기능-동일규제 차원에서 규제차익 해소 필요
-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개발·업무범위 분야의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설명
- 다만, 금융시스템 안정·건전성·소비자 보호 관련 적정 규제는 필요하고
- 업권간 나눠먹기식의 규제개선이 아닌 금융업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함을 강조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완화
-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(예시) 완화
- 신협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및 지역신협 공동유대 현실화

< 10.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간담회(5.27, 금융연구원) >

- 은행·증권·여전사 등 금융기관 및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외국 금융당국과의 규제격차해소 및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을 논의
 - 전업주의를 택하는 국내법체계로 해외에서도 IB, 유가증권 인수·주선·매매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 발생
 - 신흥국의 지분취득 규제, 진출방식 제한 등으로 **금융지주사의 해외영업 확대에도 어려움 발생**

- 금융위원장은 전업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로 인해 해외 영업범위가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
 - 해외영업점의 경우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**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이며,**
 - 국내 특유의 규제가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**특례규정을 마련**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
 - 한편, 금융한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
 - 잠재력이 큰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**지위고하형식에 구매받지 않는 면담**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국내법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해외 점포는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
- 신흥국에서 지분을 규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융지주사간 신용공여 제한규정(담보제공 의무화 등) 완화
-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신용공여를 외국환까지 확대(외국환 거래규정 개정)

< 11. 중소기업·소상공인·무역분야 중소기업인 간담회(5.28일 중소기업중앙회) >

- 중소기업·수출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취급요건 등 다양한 금융 규제개선 건의사항 청취
 -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2배 이상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
 - 기존 매출액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경우라도 자금난을 겪는 등 어려움이 큼
 - 이외에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, 여성기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건의
-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
 - 연체 가능성 등 고려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나, 금리를 2배 이상 높이는 등의 **불합리한 차별은 개선**
 - 매출액 외에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지원 확대
 - 아울러, 해외진출 초기부터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
 - 뿐만아니라, 기술혁신형 기업 활성화를 위한 **연대보증 폐지·기술평가시스템 도입·모험자본의 형성**의 중요성을 강조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리격차 해소, 매출액기준 위주의 대출한도 설정방식 개선
-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
- 창업 성장기, 중소벤처기업 및 여성기업인에 대한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
-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확대,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

< 12. 자산운용업계 간담회(5.29일, 금융투자협회) >

- 공모펀드, PEF·헤지펀드 등 각 분야별 운용사 및 자문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제에 대해 건의
 -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및 대형 금융기관에 준하는 과도한 업무보고서·공시 부담 완화 필요
 - 자산운용과정에서 **금감원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**가 다수 존재하여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하는데 한계
- 금융위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, 우리 자산운용사가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임을 강조
 - **자산운용사의 NCR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**하고, 우리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임을 밝힘
 - 또한, 공·사모시장이 각각의 성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모시장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**사모시장은 전문가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**할 것을 실무자들에게 당부

< 간담회시 주요 제안사항 >

-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NCR 규제 개선
- 재간접펀드의 역외펀드 편입시 판매사 경유의무 완화
- 독립투자자자문업자(IFA) 제도의 조속한 도입
- 해외 진출을 제약하는 자기 운용펀드 투자 규제 대폭 완화
- PEF에 대한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 개선, 메자닌 투자제한 완화